■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6. 7. 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성명(법인 또는 기관명)	
업등록 구분	[] 전문 [] 일반	

신고사항

[] 명칭 또는 상호 변경 [] 영업소 소재지 변경 [] 대표자 변경 [] 기술인력변경

변경일자

	구분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	기술인력
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변경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4.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없음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2.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합니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